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출입·검사·수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약사법」이 개정(법률 제17208호, 2020. 4. 7. 공포, 2020. 10. 8. 시행)됨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12.31.~12.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를 각각 제32조의12 및 제32조의13으로 하고,
제3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11(보고와 검사 등)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"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32조의11(보고와 검사 등) 별</u> <u>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</u> <u>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</u> <u>속 기관의 장"이란 지방식품의</u> <u>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.</u>
<u>제32조의11 · 제32조의12 (생략)</u>	<u>제32조의12 · 제32조의13 (현행 제</u> <u>32조의11 및 제32조의12와 같</u> <u>음)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	
연 락 처	(043) 719 - 2621